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6호로 2022년 10월 2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추가 (안 제8조)

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안 제9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14. ~ 10. 19. /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안을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가. 제명 및 적용대상 변경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서울시에서는 2021년 9월 30일 고독사 정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념을 기존 1인 가구에서 고립된 전체가구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고독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고,

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 및 사무의 위탁 신설 (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반찬제공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을 추가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검토 결과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2021. 4. 1.)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2021년 9월 30일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로 인한 빈곤, 사회적 소외 등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독사의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가구에서 고립된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